

ITU-T의 IPR 정책 및 논의동향 분석

박웅* · 이병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he Analysis on IPR Policy & related Discussion Trends in ITU-T

Wung Park* · Byoung-Nam Le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mail : wungp@etri.re.kr* · b.n.lee@etri.re.kr**

요 약

최근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술간 융합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진입장벽의 약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상호접속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 시장선점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국제 표준화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표준화 추진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해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호배타적이라 인식되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간의 관계는 점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표준화 추진 시 IPR 처리 등에 관한 정책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between different technologies and weakness of entry barriers, standardization for interoperability and intercompatibility is being recognized as a core strategy for preoccupation of global IT marke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Recently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is considered indispensably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lso advanced countries strengthen their positions through preemption of global IT market by linking their IPR wit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refore relationship between IPR and standardization is being changed to mutually complementary from mutually exclusiv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ITU-T's IPR policy and related discussion trends in ITU-T and try to find national policy for IPR related issues.

키워드

IPR, Standardization, Competition, Strategy, Standard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 기술

간 융합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진입장벽의 약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은 표준화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 변화의 흐름은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과 과도한 관성(excess inertia)으로 인하여 일단 표준화 선점을 하면 다른 기술로의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호접속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 시장선점의 핵심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 표준화에 있어 큰 특징은 표준화 추진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IPR이라 한다)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해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호배타적이라 인식되던 표준화와 IPR 간의 관계는 점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T에서 권고 개발 등 표준화 추진에 있어 IPR 처리 등에 관한 정책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IPR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ITU-T IPR 정책 개요

1. ITU-T 특허정책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는 ITU-T 권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PR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ITU-T 특허정책(patent policy)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TU-T는 특허정책에서 ITU-T가 개발하는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국제 표준이나, 권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 전기통신의 전 세계적 호환성의 보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ITU-T는 특허정책에서 명시한 권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ITU-T에서 개발한 권고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며, 권고에 포함된 특허권자의 상업적이나 독점적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모든 업체가 IP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IPR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라이선싱 혹은 로열티 등의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ITU-T는 밝히고 있다. ITU-T의 특허정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TSB)는 특허나 유사 권리의 정확성, 유효성

혹은 범위에 관한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표준 제안을 하는 모든 ITU-T 회원은 TSB가 관련 정보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특허가 자사 혹은 타사의 특허 혹은 출원중인 특허의 적용을 TSB 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만일 ITU-T 권고가 개발되고 위의 1절에서 언급된 관련 정보가 밝혀지면, 아래의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1)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권고는 특정 조건이나 로열티 지급 의무 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지는 않으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관련 당사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할 경우, 협상은 관련 당사자들 간에 ITU-T 외부에서 진행된다.
- 3) 특허권자가 위의 2.1절이나 2.2절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권고도 성립될 수 없다.

3. 특허권자는 위의 2.1, 2.2, 2.3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던지 간에 TSB가 제공하는 ITU-T "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선언서에 선언서에 제시된 조항 외에 추가 문구, 조건 혹은 여타 배타적인 조항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2. ITU-T 특허정책 실행지침

ITU-T는 사무국(TSB), 연구반(SG) 및 ITU-T 활동 참여자들이 권고를 개발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ITU-T 특허정책의 이해와 실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정책과는 별도로 "ITU-T 특허정책 실행 지침(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ITU-T Patent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본 지침의 목적은 ITU-T에서 개발하는 권고와 관련된 특허가 조기에 공개 및 검증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표준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잠재적인 특허권 문제를 방지하는데 있다.

ITU-T 특허정책 실행지침에서는 신규·개정 권고 승인 시의 처리절차, 연구반의 작업방법, ITU-T 권고 발간 후 특허가 인지된 경우의 처리절차, ITU-T 비회원인 보유 특허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ITU-T 특허 성명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SB)는 ITU-T의 사무국으로서 ITU-T의 표준화

ITU-T는 권고의 제정절차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성명 데이터베이스(Patent Statement Database)를 제공하고 있다. 본 DB는 ITU-T 권고 제정에 참여한 국가 및 기관 등이 사무국(TSB)에 통보한 특허 성명 관련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권고의 이용을 위해 특허의 사용자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무국에 특허 성명을 제출한 기관과 접촉하기를 희망하는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ITU-T는 본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기관이 사무국에 제출한 특허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III. ITU-T IPR 논의 동향

ITU-T는 권고 개발 과정에 있어 특허의 처리 등 IPR 관련 논의를 위하여 ITU-T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IPR Ad Hoc Group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본 그룹은 ITU-T의 전략자문그룹인 TSAG 회의와 연계하여 2년 동안 3차례의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메일 리플렉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본 그룹의 구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IPR Ad Hoc Group 구성

의장	Mr. Houlin Zhao(TSB 국장)	
에디터	Patent	-
	S/W Copyright	Mr. Keith Chu
	Marks	Ms. Amy Marasco
사무국	Mr. Masamichi Niiya Ms Marie-Hélène Bercher	

금번 IPR Ad Hoc Group 회의는 7개국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5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세 가지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기존의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상표권에 대한 각 지침의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TU-T와 ISO/IEC 간 특허정책 공유

지난 2005년 2월 7일에 개최된 WSC²⁾ 회의에서 ITU-T, ISO 및 IEC 간 공통 특허정책 개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그룹은 향후 WSC에서

2) WSC(World Standardization Cooperation)은 ITU-T, ISO 및 IEC간 표준화 협력을 위하여 지난 2001년 설립된 협력체이다.

의 진행상황과 논의 결과를 검토하여 TSAG 및 WTSA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 ITU-T와 ITU-R 간 특허정책 통합

ITU-T는 ITU-R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ITU-R과 IPR 정책을 통합하고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ITU-R은 2005년 말까지 ITU-T와 유사한 특허 지침을 채택할 계획이다.

다.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 개정

지난 2004년 7월에 ITU-T의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이하 “특허선언서”라 함)가 개정됨에 따라 특허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이용의 편의성, 정보의 정확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 특허선언서 개정(2004년 7월)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버전간의 차이를 DB에 업데이트
- 이용한 특허선언서의 버전일자 표기
- 이용 편의를 위해 Readme text 사용
- DB에 특허정책의 옵션이 아닌 특허선언서의 옵션을 표기
- DB에 선택된 옵션의 전문을 포함

라. 특허 실행지침 개정

특허선언서의 개정에 따른 특허선언서와 특허 실행지침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특허선언서에서 사용된 “호혜주의(reciprocity)”란 용어 정의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IV. 결 론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기술간 융합, 표준의 복잡화, 개발 기술에 대한 보상 요구 증대 등 표준화를 둘러싼 환경의 급변과 함께 표준화와 IPR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표준화와 IPR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 각국 및 기업은 IPR의 확보와 해당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 시장 선점 및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IPR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특허 등 IPR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은 관련 당사자 간에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표준화 기구 내부에서는 표준화 추진에 있어 IPR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표준화 추진의 효율성 저하 및 사용자의 효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표준화 기구가 표준화 추진에 있어 관련 IPR의 적극적인 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화와 IPR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국제 표준화 추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IPR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 측면으로는 각 기술 분야의 국가별 관련 IPR 확보 현황 및 국가별 관련 기업 현황의 파악을 통해 자국의 포지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각 기술 분야별로 국가 혹은 기업 별 세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ITU-T Patent Policy
- [2]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ITU-T Patent Policy
- [3] ITU-T Software Copyrights Guidelines
- [4] Report of the TSB Director's Ad Hoc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11-12 March 2005)